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 검토보고서

2021. 6. 24.

행 정 재 무 위 원 회
전 문 위 원　조 남 문

1. 제 안 자: 성동구청장

2. 제안이유

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기금 수입과 지출의 증액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운용 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1) 수입 및 지출 계획 변경(안)

(단위: 천 원)

수 입 계 획					지 출 계 획				
항 목	수 입 액			비 고	항 목	지 출 액			비 고
	당 초	변 경	증 감			당 초	변 경	증 감	
합 계	**110,600**	**201,714**	**91,114**		**합 계**	**110,600**	**201,714**	**91,114**	
전 입 금	100,000	100,000	-	2020년 결산반영	비융자성 사 업 비	91,500	91,500	-	
예 치 금 회 수	9,000	100,000	91,000	2020년 집행잔액	예 치 금	19,100	110,214	91,114	21년 말 기금예상액
이자수입	1,600	1,714	114						

2) 주요 변경내용

○ 수입계획 변경사유

- 2020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증가
- 2020결산 및 2021년도 이자수입 조정

○ 지출계획 변경사유

- 2021년도 말 기금예상액(예치금) 증가
- 2021년도 이자수입 조정

3) 세부내역

○ 수입 계획

(단위: 천 원)

장-관-항-목	변경 전	변경 후	증 감	비고
합 계	**110,600**	**201,714**	**91,114**	
200 세외수입	1,600	1,714	114	
210 경상적세외수입	1,600	1,714	114	
2016 이자수입	1,600	1,714	114	
216-01 공공예금이자수입	1,600	1,714	114	
7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	109,000	200,000	91,000	
710 보전수입등	9,000	100,000	91.000	
714 예치금 회수	9,000	100,000	91,000	
714-01 예치금 회수	9,000	100,000	91,000	
720 내부거래	100,000	100,000	-	
721 전입금	100,000	100,000	-	
721-03 기타회계전입금	100,000	100,000		

○ 지출 계획

(단위: 천 원)

조직·부문·정책·단위·세부사업·편성목	변경 전	변경 후	증 감	비고
총무과	110,600	201,714	91,114	
일반행정	110,600	201,714	91,114	
지방행정 역량 강화	91,500	91,500	-	
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(남북교류협력기금)	91,500	91,500	-	
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	91,500	91,500	-	
201 일반운영비	1,500	1,500	-	
01 사무관리비	1,500	1,500	-	
1) 심의위원회 수당 등 개최비용	1,500	1,500	-	
307 민간이전	90,000	90,000	-	
02 민간경상사업보조	90,000	90,000	-	
1)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	90,000	90,000	-	
재무활동(총무과)	19,100	110,214	91,114	
보전지출(남북교류협력기금)	19,100	110,214	91,114	
보전지출(남북교류협력기금)	19,100	110,214	91,114	
602 예치금	19,100	110,214	91,114	
01 일반예치금	19,100	110,214	91,114	
1) 예치금	19,100	110,214	91,114	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.

○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총 규모는 **2억 171만 4,000원**이며, 당초 예산 대비 **9,111만 4,000원을 증액**하려는 것으로

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, 전년도 기금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액 9,100만 원과 이자수입 11만 4,000천 원이 증가한 내용을 수입계획에 반영하고, 이를 지출계획의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본 동의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며, 기금 변경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므로 구의회 의결 대상이 되어 제출되었습니다.

○ 향후, 한반도 평화·번영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 기금 설치 목적에 따라 교류협력 증진 사업,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.

< 관련법규 >

붙임 1	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